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85 | 2025.05.19 (2025.05.12~2025.05.1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환경부>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나노팜센터의 지정과 역할, 나노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과 역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압류 석유제품 구매 시 석유판매업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구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9인)**」 ,

대형 CP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시장조성, 유통·안전관리 등 기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비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비용 등 사업주의 고용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

의류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6인)**」 ,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회는 휴지기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환경부)..... 7
-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9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9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9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1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1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통신위원회).....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1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1인) 13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1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0인) 1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0인) 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의원 등 12인) 1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의원 등 13인) 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의원 등 15인) 16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9인) 1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의원 등 13인) 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의원 등 13인) 17
-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18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18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19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의원 등 14인) 1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20
-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의의원 등 10인) 20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21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의원 등 10인) 2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22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의원 등 16인) 23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의원 등 15인) 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2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2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2인) 2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대선으로 인한 국회 휴지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건설/부동산]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철근량 증가에 관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번복시킨 사례
- [ESG]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2025-2030) 발표
- [바이오/헬스케어]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 개정
- [금융] 감사 의견거절 해소 이후 신속한 매매재개에 성공한 사례 소개 (B사, 코스닥상장법인)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5 (2025년 5월 2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 순환이용 제품 수요 촉진, 기반시설 구축·기술개발 등 산업 육성 전방위 지원	2025-05-14
-----	---	------------

환경부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힘

이번 방안은 전세계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①순환이용 시장 조성, ②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③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④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순환이용 시장 조성

-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
-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 추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 마련
- 막대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②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 폐배터리, 공정 불량품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
-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하여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
-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③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탄산리튬 순도 99.5% 이상)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 개발
-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과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마련
-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 추진
-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2025년 하반기까지 준공하여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
-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2025년 내로 설립하여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시간 및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

④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 · 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 강화
- 운송 · 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하고,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 개발
-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 지원
-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정비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 내로 구축하여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 · 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 및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

- 대출형 투자유치(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자본으로 인정하여 일시적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제한 완화
- 초기 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현금 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13% →10% 이상)

2025-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 ·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사전지원 제외 기준 개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하였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은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음. 이에, 금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② 초기 중견기업 연구비 부담 완화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됨.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하였음. 향후, 중소기업 수준(10% 이상)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적용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금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규모는 인공지능 분야 추경을 포함하여 약 1조 3,506억 원이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5-14 시행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중 비자전로프에 적용되는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정격하중별 검사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검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며, 검사에 따른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5-14 시행
---------	------------------	---------------

유원시설업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등 영업질서 유지 의무 이행을 위해 사업장에 직접 상주하거나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되, 설치검사를 실시한 어린이놀이기구이면서 안정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만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상주 또는 관리 인력을 두지 않고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5-15 시행
-------	----------------------------	---------------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5.12. ~2025.06.23.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8호, 2025. 1. 31. 공포, 8.1. 시행)됨에 따라, 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과 역할,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과 역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나노기술인력양성을 지원해야 하는 공공나노팹센터 역할을 명시 (안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제1호)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나노팹센터의 범위 및 운영, 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 ③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국내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나노팹 통합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정의 (안 제11조의2 신설)
-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위한 전담기관의 업무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의3 신설)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mailto:과학기술정보통신부_원천기술과) (전화: 044-202-45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5.05.12. ~2025.06.23.
-----------	------------------------------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91호, 2025. 3. 18. 제정·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3조)
- ② 대형가속기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 ③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④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지원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제9조)
- ⑤ 사용료·대부료 감면, 국유재산·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안 제11조)

⑥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 \(전화: 044-202-4661\)](tel:044-202-4661)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5.15.
~2025.06.24.

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 석유제품 공매는 공급처에 포함되지 않아 석유판매업자들의 공매 참여에 제한이 있음. 이에 압류 석유제품 공매 시 석유판매업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안 제2조)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전화: 044-203-5226, 팩스: 044-203-4762\)](tel:044-203-5226)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5.16.
~2025.06.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생활물류 쉼터가 종사자 휴식, 운송수단 정비 등 그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물류 쉼터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5, 팩스: 044-201-5601\)](tel:044-201-4155)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5.12.
~2025.06.2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본인확인조치 대상 금융회사 추가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 의무 대상 금융회사로 추가

② 기타 문안정비 (제10조의2제3항 개정)

- 현재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화: 02-2100-2974, 팩스: 02-2100-2946\)](tel:02-2100-2974)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5.15.
~2025.06.24.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2025. 3. 18. 개정) 등의 시행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2025. 9. 19.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등록 요건 등 준수 여부 점검 (안 제29조의2)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②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등 (안 제30조의11)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③ 전송자격인증의 취소 기준 및 절차 (안 제30조의12)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 취소의 기준, 절차를 규정

※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전화: 02-2110-1536, 팩스: 02-2110-0140\)](tel:02-2110-153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2025-05-15 발의
-------	--	---------------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에 상응한 조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며, 3자간 합의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 직불이 가능함. 이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1인)	2025-05-16 발의
-------	---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임. 또한,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2)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2025-05-16 발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음.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0인)

2025-05-12 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금융 시장의 활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7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0인)

2025-05-13 발의

현행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74조)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2025-05-15 발의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약체결 이후 상세분석 및 설계를 거쳐 과업범위가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고, 과업범위가 확정된 이후에도 급변하는 기술적·제도적·정책적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정부는 20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의결대로 계약금액 조정이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2025-05-13 발의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 옴

이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독점의 폐해가 심화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그러나,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개정 취지와는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여전히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에 불합리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유럽에서 DMA(Digital Market Act) 시행 이후 앱 마켓사업자는 앱 외부에서의 결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준도 축소함. 국내도 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당초 개정 취지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는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이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인앱결제를 강제한 앱 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50조제1항제9호의2 및 제55조제3항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2025-05-14 발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남긴 게시물 등의 정보(이하 “디지털정보”라 함)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정보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11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9인)

2025-05-14 발의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터넷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센터와 구분되는 고성능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상 별도로 정책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량 전력·냉각시설·통신망이 동시에 필요한 인프라임에도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 및 전력 증설과 관련하여 행정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분산 인프라가 핵심임에도 이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산업 인프라로서의 위상 및 정책적 투자 유인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진흥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초거대 모델,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2025-05-14 발의

최근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절한 대가 지급을 지속 회피하는 실정임

이에 대형 CP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사 11 부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예외사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위원회와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심의제도 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제4항·제5항 및 제48조의2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2025-05-13 발의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수준 향상, 인구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 반려동물 지위의 향상 등으로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과거 펫푸드, 의료 등의 일부 분야에 그치던 반려동물 산업은 펫보험, 생체기술 연계, 사물인터넷,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되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반려동물 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 반려동물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이는 ‘동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지원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반려동물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2025-05-13 발의

전기는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재화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 사업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 지급, 전기산업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법정단체가 설립 또는 지정되지 않아 지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1965년 설립된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등의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조사업무, 송·변·배전 기능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기계 중심단체로 평가되고 있음. 전기산업계 14개 협·단체도 대한전기협회의 대표성·공공성·전문성 등을 감안해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상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상태임

이에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7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025-05-13 발의

현행법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등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며,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고,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한 바 있음

이에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출석의무를 규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그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1조의3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2025-05-14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재양성 교육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산학 협력 위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하는 가운데,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각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와 설치, 운영 및 산업체 부담금·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반도체 등 계약학과에 대한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을 지원한 실적이 전무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법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이상 네 가지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바, 해당 범위에는 인공지능 산업이 제외되어 있어 법적인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가 국가첨단전략 산업을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계약학과와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재육성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 및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
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2025-05-16 발의

현행법은 고압가스시설 공사 관련 건설업종 및 시공자 적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법적으로 공사가 가능함

반면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해당 가스시설공사의 시공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시공자에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은 시설의 시공·관리 의무와 시공기록 등의 작성·보존·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 전문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시공자에게 보험가입 및 시공기록 등의 작성·보존·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3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2025-05-16 발의

전기차, ESS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적 관점이 아닌, 환경규제 관련 제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지방자치단체 반납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반납 대상이 아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부재함

한편, EU 배터리법 시행 등 글로벌 통상 규제가 강화되고, 각 국의 보호주의로 인해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정한 가운데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 재자원화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제임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시장조성, 유통·안전관리 등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5-15 제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재생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서류·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2025-05-12 발의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금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려금의 법적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비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비용 등 사업주의 고용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025-05-12 발의

현행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 보험요율 산정 방식은 환경책임보험의 최근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2025-05-12 발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임.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단체교섭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청은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하청은 근로관계 개선 등과 관련해 실질적 권한 또는 능력이 없어 하청 근로자들은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됨. 그동안 원청과 하청의 독립적인 법인격이라는 법적 장벽 때문에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 노사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쟁의를 불법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음

또한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동3권의 심각한 제약과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어,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도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6인)

2025-05-14 발의

최신 유행이 반영된 의류를 하나의 업체가 제작·유통하는 방식의 ‘패스트 패션’이 유행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SPA 브랜드가 의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생산방식, 유행의 민감성 등으로 다량의 의류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의류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류제품 순환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5인)

2025-05-14 발의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2025-05-16 발의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2025-05-12 발의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음

하지만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경우, 6가크롬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Tl)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경성 기준이 없고, 최근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는 시멘트 내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미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택건설사업주체에게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와 사용량, 시멘트의 제조사 등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2 및 제10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2인)

2025-05-14 발의

현행법령은 주택의 전용면적, 세대 수,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지역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 심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주차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차의존도 및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주차기준이 적용되어 생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며, 단순한 주차면적 기준을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의2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대선으로 인한 국회 휴지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5/19(월) 14:00	[플랫폼법정책학회 한국벤처창업학회 공동세미나] 콘 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 정책 제안	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5/20(화) 09:30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김예지·김영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1(수) 14:00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 있는 국가! MICE가 만드는 미래 : 2025 마이스(MICE) 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 전달식	김윤덕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자료집 등	5/19(월)	「Data+」 제9호(2025-9호) 발간	국회도서관	
	5/2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1호(2025-8호) 발간		
	5/21(수)	「금주의 서평」 제729호(2025-20호) 발간		
	5/21(수)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0호(2025-10호) 발간		
	5/21(수)	「Data&Law」 제29호(2025-4호) 발간		
	5/21(수)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35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5/12(월)	「Data+」 제8호(2025-8호)	국회도서관	
	5/14(수)	「금주의 서평」 제728호(2025-19호)		
	5/15(목)	「최신외국정책정보」 제9호(2025-9호)		
	5/13(화)	「NABO Focus」 제108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5/12(월)	건설/부동산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철근량 증가에 관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감정결과와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번복시킨 사례
5/12(월)	ESG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2025-2030) 발표
5/13(화)	바이오/헬스케어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 · 개정
5/14(수)	금융	감사의견거절 해소 이후 신속한 매매재개에 성공한 사례 소개 (B사, 코스닥상장법인)
5/16(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5 (2025년 5월 2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